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4
----------	-----

2018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5일, 김태수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나. 주요골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고농도 미세먼지시 시·도지사는 운행제한 등을 포함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6조 ~ 제8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제10조)
-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나. 제안배경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은 모두 호흡기 등으로 유입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개요>

다. 구성 체계

-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제1조~제11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운행제한 대상 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조 항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시장 등의 책무 및 계획수립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 개정)

라. 검토의견

1) 정의(안 제2조)

-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PM2.5 예보(17시 기준) 결과,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일에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사전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 동안 $50\mu\text{g}/\text{m}^3$ 초과하여 연속으로 나뉘일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일 정	(이틀 전)	(하루 전일)	(당일)
발령기준 (PM-2.5 예보)		$50\mu\text{g}/\text{m}^3$ 초과	$50\mu\text{g}/\text{m}^3$ 초과 매우나쁨($75\mu\text{g}/\text{m}^3$)
		(범례)  예비저감	 비상저감

2)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3)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차량 등(안 제5조~제10조)

- 안 제5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장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특히 PM2.5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¹⁾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0조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대상 차량의 단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1항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같이 사용 연료에 상관없이 5등급²⁾ 자동차로 통일하여 수도권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인천시(안)	경기도(안)
제4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한편, 현행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제3호 “미세먼지 고농도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이하 생략)

제정·시행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음.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행령(안)을 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특수한 공용 목적 수행 자동차 등을 운행제한 제외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업용³⁾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제한 여부에 따라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음.

제10조(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다만, 동 제정안 부칙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⁴⁾을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일반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3) 서울시 등록 5등급 자동차 중 영업용은 18,000대 예상(5등급 경유차 중 6.5% 차지)

4) 현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최초등록일 '05.12.31일 이전 자동차 및 '06.1.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유예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 동안 영업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⁵⁾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절차를 준용하며, 단속공무원의 모자착용이나 촬영카메라 휴대 등 단속방법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조례보다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및 시행⁶⁾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5) DPF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은 장치가격의 10~12.5%(37만원~103만원) 수준이며,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음

6) '19년 2월 15일 시행

통일을 기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통일을 기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4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통일을 기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함.

2. 주요 골자

-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함(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1조)
-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함(안 제7조제1항)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단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9조제3항)
- 별지1호 서식을 삭제함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특별법 시행령으로”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공공부문”을 “공공·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경유차량으로”를 “자동차로”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별지1호의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를 “특별법 제22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서”를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로 한다.

안 별지1호 서식은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u>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행정 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p>	<p>제1조(목적) ----- 「<u>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u>」에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u>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u> ----- -----. 2. ~ 3. (제정안과 같음)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시민은 시·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작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특별법 시행령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p> <p>-----</p> <p>-----</p> <p>-----</p> <p>-----</p> <p>-----</p> <p>-----</p> <p>-----</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p>

제정안	수정안
<p><u>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u></p> <p>4. <u>공공부문</u>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u>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u>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p> <p>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p> <p>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u>경유차량으로</u>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p> <p><u>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p>	<p><u>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개선</u></p> <p>4. <u>공공·행정기관</u> ----- 5. (제정안과 같음) 6. ----- <u>시장이</u> -----</p> <p>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 ----- <u>자동차로</u> ----- ②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u>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u></p> <p>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u>별지1호의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u>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u>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u></p>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p> <p>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p> <p>① 시장은 <u>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u>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u>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별표1호 서식]</u></p>	<p>② ----- -----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제16조에 따라 <u>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u>를 ----- -----.</p> <p>③ ----- ----- ----- <u>한다.</u></p> <p>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p> <p>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p> <p>① --- <u>특별법 제22조제1항에</u>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u>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u> ----- -----.</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